

2024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사례집



1. 표절

- 13p [Q 1] 2021년 “표절” 규정이 제정되기 전 2020년에 출판된 논문에 대한 표절 신고를 할 경우 현재 어떤 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4p [Q 2] 두 명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같이 인용하여 각각의 논문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15p [Q 3] 인용표시 없이 감사의 글로만 표기한다면 표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5p [Q 4] 국문은 몇 어절 이상/외국어는 몇 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16p [Q 5] 학위논문 작성 중 자신의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표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6p [Q 6]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 방법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7p [Q 7] 인용할 논문 앞면에 명시된 “배포 금지” 관련 문구가 있다면 저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7p [Q 8] 저널에 게재되지 않는 워킹 페이퍼를 인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18p [Q 9] 연구용역 기관 발간 자료의 표절 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8p [Q 10] 타인이 자신의 논문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논문 출판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9p [Q 11]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과를 위한 표절 유사도 검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 19p [Q 12] 두 학회 간의 표절을 확인하였을 때,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학회가 어떤 처벌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p [Q 13] 자료집 제작 중 원저자의 자료를 수정·보완하게 될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20p [Q 14] 참고문헌의 표기가 해당 논문의 본문에서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은 연구부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21p [Q 15] 대학원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되는 경우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2p [Q 16] 연구부정행위로 고발된 피조사자가 표절을 자발적으로 인정할 경우, 학회 자체에서 논문을 내릴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22p [Q 17] 저희 기관의 비공개 보고서를 타 기관에서 표절(유사도 36%)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표절 의심 확인 경위는 저자분이 타 기관 보고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보고서를 발견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저희 기관에서는 보고서를 즉시 공개 전환하였고, 3가지 사항(① 해당 보고서 전면 개편 및 수정, ② 해당 보고서 비공개 조치, ③ 해당 보고서 수정본을 연구진에 공유)을 상대 기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23p [Q 18] 학술지 논문의 본문 내 인용표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C(19**)가 개발한 CCR 모형은 F(19**)가 제시한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C(19**), F(19**) 모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23p [Q 19] 학술지 논문이 출판 전인데 해당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여 먼저 결과보고서를 발표해도 되나요, 추후 발표되는 논문이 표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4p [Q 20]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 양호한 편이지만 내용상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고 인용표시 등의 형식적인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은 논문의 경우 표절인가요?
- 25p [Q 21] 국가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하거나,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인용표시에서 어떤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보고서 작성의 경우 인용표시에서 "보고서 작성 완화 기준"이라는 것이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완화 기준이 계속 유효한가요??
- 25p [Q 22] 전문가 워크숍의 내용을 인용하여 연구하고 싶은데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6p [Q 23] 본인이 작성한 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학위논문이나 다른 저서에서 활용하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27p [Q 24] 학술지가 투고자에게 특정 문헌을 인용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28p [Q 25]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보고서가 완성된 경우 그 전문가는 저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인용과 참고문헌에 포함하여 작성하나요?
- 29p [Q 26] 학술지 논문에서 학위논문의 내용을 상당수 인용했다는 표시를 할 경우와 안 한 경우의 2가지 경우가 있다면 표절 여부가 달라지나요?
- 29p [Q 27] 박사학위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학술지 논문을 먼저 출판하고 관련 내용을 그대로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 30p [Q 28]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교의 교재로 만든 개론서도 연구윤리의 대상이 되나요?
- 30p [Q 29] 회사의 내부자료 및 회사에서 발주한 비공개 용역보고서를 보안서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자료를 인용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합니다.
- 31p [Q 30] 논문의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절에 해당하나요?
- 31p [Q 31] 발주기관으로서 위탁연구기관이나 용역수행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편집하거나 그대로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만들 때 인용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32p [Q 32] 본인이 연구결과를 작성한 독창적인 표와 그림에 대해서도 출처가 본인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나요?
- 32p [Q 33] 2인 공저의 논문을 바탕으로 각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여도 자료 공유 관련된 표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33p [Q 34] 법령 개정의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 33p [Q 35]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등재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 34p [Q 36] 제 논문을 표절한 타인의 논문이 철회 조처되었으나, 아직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됩니다. 이 경우 제 논문을 발전시켜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더라도 표절하고 철회된 논문에 대해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34p [Q 37] 인용표시에서 불완전한 표기로서 연도가 틀리거나 저자 이름의 누락도 표절에 해당하나요?

35p [Q 38] 다른 사람이 저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적절한 인용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표절인가요?

35p [Q 39] 저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얻으면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36p [Q 40] 자기주장 없이 여러 저술에서 가져와 작성한 논문은 표절인가요?

36p [Q 41] URL 등 인터넷 자료의 올바른 인용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37p [Q 42] 본문에 출처를 표기한 경우 국문요약, 서론, 결론의 출처 표기는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나요?

37p [Q 43] 법률을 영문 번역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2. 위조 및 변조



39p [Q 1] 제3자가 연구노트를 기록하고 허위로 서명하였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하나요?

39p [Q 2] 위조와 변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0p [Q 3] 특정 데이터 값을 제외하고 논문에 발표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인가요?

40p [Q 4] 출판된 논문에서 데이터 오류를 발견한 경우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3. 중복게재



43p [Q 1] 부당한 중복게재의 정의에서 의미하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44p [Q 2] 허용되는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은 무엇이며, 이중게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6p [Q 3]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의 일부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나요?

47p [Q 4] 부당한 중복게재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는 논문 덧붙이기와 논문 쪼개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8p [Q 5] 부당한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49p [Q 6]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당한 중복게재는 무엇인가요?

기타 질문

49p [Q 7]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학위논문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까요?

4. 저작권 침해



- 51p [Q 1] 연구과제 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52p [Q 2] 여러 강사의 강연을 모아 이를 자료집으로 만들 때, 반드시 저작권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 53p [Q 3] 공개된 매체의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를 사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54p [Q 4] 온라인 강의교안을 제작 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 55p [Q 5] 논문에 인용하려는 그림에 워터마크가 있는 경우 이것을 삭제하고 인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55p [Q 6] 저널에 논문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저자가 추후 그 논문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 56p [Q 7] 연구용역의 발주처가 저작권을 갖는 연구과제 성과를 연구진들이 논문 발표 시 발주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 56p [Q 8]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것인가요?

5. 저자자격과 올바른 저자표시



- 59p [Q 1] 연구보고서의 기여자 선정에 관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60p [Q 2]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제1저자(주저자)가 2명일 때 기술방법이 궁금합니다.
- 60p [Q 3] 저작권 또는 저자자격(authorship)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61p [Q 4] 논문의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을 분류하는 저자의 자격 기준 및 윤리 준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 61p [Q 5] 부당한 저자표시에 관한 조치 사항이 궁금합니다.
- 62p [Q 6] 동의 없이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자 철회 조치가 궁금합니다.
- 62p [Q 7] 논문 데이터 오류 수정에 기여한 B를 공저자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63p [Q 8] A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B가 논문의 모든 내용을 새로 작성하였다면, 저자의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64p [Q 9]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65p [Q 10] 주 교신저자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65p [Q 11]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저자 추가 요청이 학술지 편집자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66p [Q 12] A 학생 저자가 지도교수에게 자신의 논문 연구결과의 사용을 '승인'하였더라도, 부당한 저자표시(유령저자, 저자됨의 거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66p [Q 13]** 연구 사업단의 자료만 제공한 연구원을 공동연구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67p [Q 14]** 국내 학술지(KCI) 논문을 작성할 때, 저자(영문)명 표기와 사사(감사의 글) 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 68p [Q 15]** 대학원생의 졸업 연구보고서를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68p [Q 16]**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한 연구주제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저자에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69p [Q 17]** 이미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할 때 저자가 바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69p [Q 18]** 저자로부터 논문 자진 철회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논문은 출판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요청을 수락해야 하나요?
- 70p [Q 19]** 위탁 연구 개발과제에서 발생된 논문에 자금을 제공한 기관에서 저자 삽입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나요?
- 71p [Q 20]** 저는 A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B 대학의 교수님께 실질적으로 지도를 받아 B 대학에서 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경우 논문 소속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2p [Q 21]** 저는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논문 저자로 참여가 허락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실험지원만을 하여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면 논문에 저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성과나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73p [Q 22]** 석사학위논문 내용을 변화 없이 발췌만 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되었는데, 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지도교수, 학생은 공동저자가 되었습니다. 지도교수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가요?
- 74p [Q 23]** 논문작성에 기여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공저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부정행위로서 책임은 나머지 공저자 중에서 누가 부담하나요?
- 74p [Q 24]** 프리랜서의 경우, 소속기관 표기 시 임의로 소속기관을 표기해도 되나요?
- 75p [Q 25]** 제가 참여하지 않은 연구계획서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75p [Q 26]** 논문 투고 당시의 소속기관과 논문이 출판되는 시점의 소속기관이 다른데 소속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 76p [Q 27]** 논문의 소속 정보(affiliation) 기재 양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76p [Q 28]** A 대학교 학부생들을 B 대학교 제 연구실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B 대학교 기자재로 실험하여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 학부생들의 소속을 A로 표기하나요, B로 표기하나요?
- 77p [Q 29]** 저자 구성에는 이의가 없으나, 저자의 순서(order of authorship)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채로 혹은 합의된 방향과 다르게 투고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78p [Q 30]**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참여자들이 자신들 명의로만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78p [Q 31]** 논문 투고가 완료되었는데 실험을 수행한 연구원의 이름이 논문에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연구부정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 79p [Q 32]** 연구보고서 저자표시에서 빠지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 79p [Q 33]** 학생의 학위논문이 차후에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논문의 저자에 지도교수 이외 제3자가 추가되는 것이 무조건 연구윤리 위반이 되나요?

80p [Q 34] 논문의 저자 숫자가 수십 명 이상인 경우 모두 표기하여야 하나요?

81p [Q 35] 교신저자 대신에 제1저자가 교신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81p [Q 36] 가족 간 공동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82p [Q 37] 연구부정행위가 저자 역할에 따라 면책될 수 있나요?

6. 사사표기



85p [Q 1] 소속이 다른 교수 2명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개의 사사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5p [Q 2] 발행 완료 및 수록된 논문에 사사표기 오류로 변경 신청을 요구하여 수정할 경우 연구윤리 및 학회지 발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86p [Q 3] 의학 연구 분야의 특성상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을 다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학술지에 교내 연구비나 부속병원의 연구비 사사를 표기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87p [Q 4] 모든 지원기관에 통용되는 사사표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7p [Q 5] 박사학위논문을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을 받아 수정·보완 및 발전시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사사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8p [Q 6] 사사표기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 같아 연구윤리적으로 또는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88p [Q 7] 사사표기 관련 수정 또는 변경 심의는 어느 기관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9p [Q 8]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사사표기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9p [Q 9] 박사학위논문 일부만 발췌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해 재직 중인 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사사표기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90p [Q 10] 사사표기가 있는 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할 경우 사사표기까지 인용표시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0p [Q 11] 자율적으로 사사표기를 하고 싶은데 해당기관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1p [Q 12] 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만을 따로 활용하여 다른 연구를 할 경우 이를 논문에 밝히는 것 이외에 별도의 사사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이해충돌



- 93p [Q 1]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논문 또는 보고서에 밝혀야 할까요?
- 94p [Q 2] 직무적 이해충돌이란 무엇이며, 직무적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 95p [Q 3] 사적 이해충돌이란 무엇이며, 사적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 97p [Q 4] 지적 이해충돌이란 무엇이며, 지적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 98p [Q 5] 이해충돌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8. 연구부정행위/연구진실성 검증



- 101p [Q 1] 제보자가 제보를 취소한 경우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종료해야 하나요?
- 102p [Q 2]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제보자 성명)을 어느 범주까지 보호하고 공개할 수 있나요?
- 103p [Q 3] 예비조사 절차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103p [Q 4] 교육부 훈령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착수의 기준이 있나요?
- 104p [Q 5]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철회 논문에 대해 심의가 가능한가요?
- 104p [Q 6] 교원의 논문 및 업적 철회 요청 시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해야 하나요?
- 105p [Q 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검증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검증시효가 넘었더라도 검증해야 하나요?
- 105p [Q 8] 제보자 없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06p [Q 9] 특히 같은 지식재산권도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할 수 있나요?
- 106p [Q 10] 예비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도 되나요?
- 107p [Q 11] 예비조사 위원이 본조사 위원으로 연속적인 참여가 가능한가요?
- 107p [Q 12] 연구부정행위 검증 단계 중 "본조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08p [Q 13] 피조사자에게 제보 내용의 어느 범위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 108p [Q 14] 본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중 제외되어야 할 기준이 있나요?
- 109p [Q 15]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09p [Q 16] 본조사 수행 중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술지에서도 검증하는 경우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진행을 계속해야 할까요?

- 110p [Q 17]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거치지 않는 판정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110p [Q 18] 본조사 진행 전 해당 논문의 저자가 논문을 철회하여도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 111p [Q 19] 신규 채용 심사 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 주체 기관은 어디인가요?
- 111p [Q 20] 연구윤리 본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112p [Q 21]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112p [Q 22] 제보자가 피조사자를 외부에 공개한 경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적절한 행정조치는 무엇일까요?
- 113p [Q 23]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하여 검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114p [Q 24] 연구부정행위 제보 건에 대해 피조사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조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14p [Q 25]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 통보 시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15p [Q 26]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의 피조사자가 퇴직했을 경우, 조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 115p [Q 27]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조사 진행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116p [Q 28]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학술지 등에 본조사 결과 통보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16p [Q 29] 연구부정행위 논문 작성 시 소속기관이 해외 대학일 경우, 검증요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교에서 검증해도 되나요?
- 117p [Q 30] 학술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통보 시 대학은 다시 검증해야 하나요?
- 118p [Q 31]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119p [Q 32] 학술지원사업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도 내규의 검증시효가 적용되나요?

9. 부실학술활동



- 121p [Q 1] 부실학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의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 121p [Q 2] 부실학술지에 투고 후 다른 저널에 투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 122p [Q 3] 잘 알지 못하는 학회로부터 동료심사자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124p [Q 4]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 125p [Q 5]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10. 데이터 관리



- 127p [Q 1] 같은 연구실의 동료 연구원이 자신의 데이터 파일을 몰래 가져간 것을 발견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28p [Q 2] raw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 129p [Q 3] 각 연구팀의 책임자 간에 별도 승인이나 조건의 명시 없이 연구 데이터를 이전하였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129p [Q 4] 설문조사 결과 또는 실험결과에 대한 raw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연구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130p [Q 5]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인가요?
- 131p [Q 6] 유료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은 연구자가 다른 경로로 이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11. 연구노트



- 133p [Q 1]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 133p [Q 2] 졸업 후 타기관으로 연구노트를 가져가서 활용해도 되나요?
- 134p [Q 3] 연구노트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134p [Q 4] 서면 연구노트와 달리 전자 연구노트 사용 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 135p [Q 5] 연구참여자는 모두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나요?
- 135p [Q 6] 연구노트 관리 방법이 있나요?
- 136p [Q 7] 연구노트 작성 주기 및 작성 범위가 궁금합니다.

1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139p [Q 1]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한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 141p [Q 2] 하나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 승인을 받고 수행한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개의 논문을 작성하고 모든 논문에 IRB 승인 번호를 동일하게 적시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 142p [Q 3]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다년간 수행하는 연구의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는 어느 기관에 설치·운영되는 IRB에서 받아야 하나요?

- 145p [Q 4] 우리나라 기관 소속 연구자가 외국인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IRB 심의와 동의 획득에 있어 어떤 점에 주의하여야 하나요?
- 147p [Q 5] 연구대상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동의서)으로 받아서 동의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 149p [Q 6]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나 인체유래물 기증자와 함께 작성한 동의서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 150p [Q 7]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가 면제될 수 없나요?
- 151p [Q 8]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일이 면제될 수 있나요?
- 153p [Q 9] IRB 심의가 면제될 수 있는 연구는 동의 획득도 면제되나요?
- 155p [Q 10] IRB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 상 연구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57p [Q 11] IRB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 상 연구진 명단과 연구결과를 상 저자 명단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 159p [Q 12]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적절한 시점은 언제이고, 여러 세부연구가 복합되어 있는 연구에 있어 IRB 심의를 신청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161p [Q 13] 연구를 통해 수집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인체유래물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164p [Q 14]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연구라면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한가요?
- 165p [Q 15]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이 동일한 연구인데 IRB 심의 면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나요?
- 166p [Q 16] 연구대상자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169p [Q 17]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연구에 참여시키기 전에 반드시 획득해야 하나요? 또, 동의를 받을 때 연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야 하나요?
- 171p [Q 18] 연구자는 어느 IRB에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172p [Q 19] 교수(연구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취약성 우려로 인해 불가능한가요?
- 174p [Q 20]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 상 연구대상자 수와 관련하여 미준수가 발생하면 해당 연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1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 179p [Q 1] 다른 실험실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79p [Q 2]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시행기관 정의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구성의 요건이 있나요?
- 180p [Q 3] 동물실험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나요?
- 180p [Q 4] 실험동물을 정식 공급기관에서 구입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 181p [Q 5] 실험동물 남용 방지를 위한 동물실험 마릿수 산정 기준이 있나요?
- 181p [Q 6] 실험동물의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